



제 417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민수당 지원법안 농어업인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검 토 보 고

〈농어업인 기초연금 제도 도입〉

- 문대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431호)
- 박덕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800호)

2024.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 용 훈

목 차

I . 개요

1. 문대림의원 대표발의	1
가. 제안경위	1
나. 제안이유	1
다. 주요내용	2
2. 박덕흠의원 대표발의	5
가. 제안경위	5
나. 제안이유	5
다. 주요내용	6

II . 검토의견

1. 제정안의 입법 배경 및 취지	9
2. 제21대국회에서 논의 과정	18
3. 관계부처 의견	23
4. 제정안의 구성체계	27

5. 주요내용별 검토	30
(1) 총칙	30
(2) 위원회의 설치 등	41
(3) 농어민수당의 신청 및 지급 , 농어업인 기초연금 지급대상 및 지급 방법 등	48
(4) 사후관리	67
(5) 보칙, 농어업인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권리보호	74
(6) 부칙 : 시행일	74

I. 개요

1. 문대림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00431)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문대림의원 등 17인

(2) 제 안 일 : 2024. 6. 13.

(3) 회 부 일 : 2024. 6. 14.

나. 제안이유

농어업·농어촌은 식량안보와 환경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며 국민경제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음. 그러나 이상기후로 인한 경영환경 변화와 농수산물 가격 불안정으로 인한 소득감소, 급격한 농어촌 인구감소 등으로 우리 농어업은 위기에 직면해있음. 특히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농어촌의 인구감소와 고령화는 농어촌 지역공동체의 해체와 지방소멸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농어업·농어촌을 소멸위기로부터 지키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현재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농민수당 또는 농어민수당을 지급하는 등 농어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지자체별로 재정여건이 달라 전국의 농어민에게 충분한 소득안전망을 제공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는 실정임. 한편 최근 실시된 다양한

국민인식조사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농어업·농어촌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재정적 지원에도 긍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바 있어, 농어촌의 지속과 농어민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됨.

이에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농어민수당 지급에 대해 충분한 재정 지원을 실시하여, 농어민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함으로써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농어민에게 수당을 지급하여 안정적 소득기반을 제공하고, 농어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공익적 기능의 증진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민수당이 도시와 농어촌 간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농어민의 기본적인 사회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결정되도록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재원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3조).

다. 농어민수당을 지급받는 농어민은 공익기능을 수행하는 주체로서 농어업 생태계의 보전, 전통문화 계승 등을 영위하기 위한 책무를 지도록 함(안 제4조).

라. 농어민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 소속으로 농어민수당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 바. 지방자치단체에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어민수당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1조).
- 사. 농어민수당은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주 또는 농어업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에 종사하여 얻은 소득이 주된 소득인 농어민에게 지급하도록 함(안 제12조).
- 아. 농어민수당 지급신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사결과에 따라 농어민수당 지급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송부하고, 지급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수급자등에게 통지하도록 함(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 자. 농어민수당은 매월 1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의 절반 이상의 금액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급하도록 함(안 제17조).
- 차. 농어민수당 수급계좌는 별도의 계좌로 관리하되, 압류·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함(안 제18조).
- 카. 농어민수당의 지급 정지, 수급권의 상실, 환수, 특례 등을 규정함(안 제19조부터 제24조까지).
- 타. 농어민수당 지급 결정 등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하도록 함(안 제25조).
- 파.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어민 인구 비율 및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어민수당에 드는 비용 중 100분의 40 이상의 범위에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비용은 시·

도지사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호 협의 하에 분담하도록 함
(안 제27조).

2. 박덕흠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00800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박덕흠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6. 21.

(3) 회 부 일 : 2024. 6. 24.

나.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압축적 경제성장과 시장개방 과정에서 도시와 농어촌의 인구·사회·경제적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우리나라 농어업은 지속가능성을 위협받을 정도로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음.

농가인구는 90년대 이후 3.7%씩 감소하고, 농가 고령화율은 우리나라 국민 고령화율의 3배 수준이며, 현 상태대로 가면 2050년에는 226개 시·군·구 중 89개가 사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음.

농업소득은 농산물 수입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 및 지속적인 경영비 상승 등으로 지난 20년간 천만원대 초반 대에 머물면서 도농 간 소득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는데, 1995년 96%에 달했던 도시가구 소득 대비 농가소득 비율은 2019년 62% 수준까지 하락함.

농업소득 성장의 구조적 한계로 2030년에는 그 비율이 61.6%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득지원 없이 농업인 소득여건이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임. 또한 농촌마을의 열악한

인프라로 농촌지역 20~30대의 70%는 농촌을 떠나고 싶어하고 있음.

어촌 또한 2020년 기준 어업인 평균 소득은 5천 300만원으로 도시 가구 평균 소득인 6천~6천 500만원과 비교하면 크게 낮은 실정이고, 어업에 종사하는 어가 인구가 2000년 대비 61.4% 감소하고 2045년에는 어촌 지역 491개 중 87%가 소멸 고위험지역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심각한 위기에 처한 상황임.

다행히도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국민이 2010년 55.9%에서 2018년 72.2%로 증가하고 있으며, 국민들은 농어업·농어촌이 안전한 먹거리 제공, 환경·생태계 보전, 여가·휴식처 제공, 문화유산 보존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데 공감하고 있음.

이에 농어업인 기초연금제를 도입하여 농어업인의 공익적 가치창출 활동 지원과 생활안정을 위한 소득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어촌을 유지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농어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해 농어업인에게 농어업인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 소득 기반을 제공하고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 기초연금이 농어업인의 생활안정

에 필요한 수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이에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4조).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인에게 농어업인 기초연금을 지급함(안 제5조).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업인 기초연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어업인 기초연금의 지급금액을 정하되 연 최소 120만원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현금 또는 지역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도록 함(안 제6조).

마. 농어업인 기초연금 지급신청은 지급신청기관의 장에게 하고, 지급신청기관의 장은 조사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수급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바. 농어업인 기초연금의 지급 정지, 수급권의 상실, 환수 등을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사. 농어업인 기초연금 수급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수급권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지급신청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17조).

아.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어업인 인구 비율 및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어업인 기초연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 중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90 이하의 범위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국가가 부담하는 비

용을 뺀 비용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상호 분담하도록 함(안 제20조).

II. 검토의견

1. 제정안의 입법 배경 및 취지

□ 우리나라의 대내외적인 농어업환경을 살펴보면,

- 대외적으로 2004년 한·칠레 FTA가 발효 이후 20년만인 2024년 기준으로 한국은 59개국과 21건의 FTA를 체결하였고, 관세 인하로 인한 수입 단가 하락과 수입량 증가는 국내외 수급 환경을 크게 변화시켰음.
- 대내적으로는 65세 이상의 고령인구 비율이 2023년 기준 농가 52.6%, 어가 48%, 임가 52.8%에 이르고 있고, 2022년 기준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보다 연간 3,200만원 적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2002년 71.9%였던 도농 격차가 2022년 59.1%로 12.8%p 격차가 벌어졌음.

고령화, 농어가 수익감소에 따른 농업 포기와 전업 등은 농어촌 지역의 공동화 현상 등 심각한 사회 문제를 가져오고 있음.

□ 제정안의 입법취지는 대내외적인 환경변화로 농어촌지역의 공동체 해체와 농어촌 소멸 위기론이 대두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농어가 스스로의 자생적인 소득증가가 어려우므로 소득안전망을 확충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농어업인

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자는 것임.

- 농어업인 수당 지급 논의가 이루어진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우선, 농어촌은 식량 공급 기능과 안전한 먹거리 제공, 환경·생태계 보전, 여가·휴식처 제공, 문화유산 보존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를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농어촌으로의 인구 유입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2022년 11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실시한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¹⁾에 따르면 도시민의 63%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가 많다고 응답했고, 약 65.7%의 도시민은 세금 추가가 부담 의향이 있다고 했음.

□ 또한 현재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농어민수당 또는 농민기본소득을 도입하고 있음²⁾.

-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농민수당과 관련하여, 대다수의 지자체별 조례에서는 “공익적 기능이 최대한 유지·증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농어민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정의하고 있음.

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2년 농업·농촌 국민의식 조사”, 농정포커스 제214호, 2023.

2) 농민수당 성격을 지닌 최초 조례는 2017년 제정된 ‘강진군 농업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이며, 명시적으로 농민수당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려 최초로 제정된 조례는 2018년 12월 제정된 ‘해남군 농어업보전 등을 위한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임

신청 시점 이전에 특정 기간 동안 지역 내에 거주하며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 개인에게 지급하고 있음³⁾.

지자체 자체적으로 운용하는 농업인수당은 지자체마다 재정여건이 다르고 농업이 아닌 임업이나 수산업, 축산업 종사자들의 불만이 나오는 등 지급여부나 지급수준에서 차등이 발생하여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함⁴⁾.

- 그러나 지자체별 재정여건에 따라 지급금액에 차이가 있고, 추진과정과 내용에 있어서도 편차가 나타나고 있어 농어민수당의 전국화와 평준화를 이끌어낼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⁵⁾.

[지자체별 농어업인 수당 지급 현황]

(2024년 기준)

구분	사업명	사회 보장제 6)	자체 조례	대상	지급내용	지급인원 (‘23)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협의완료	‘21.05.20.	농업인	농업인당 60만원/연	202,203명
강원도	농어업인수당	협의완료	‘20.03.06.	농림어가	농가당 70만원/연	농 73,709호 림 144호 어 1,674호
충청북도	농어업인공약수당	협의완료	‘20.09.29.	농가	농가당 60만원/연	71,776호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협의완료	‘20.03.10.	농업인	1인 농가 80만원/연, 2인 가구 이상 45만원/1인	농 235,200호 임 1,221호 어 8,476호

3) 유찬희·김태영, “농가소득 직접지원 제도 실태와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10., p56-58

4) 연합뉴스, “기본소득 보장 ‘농민수당’ 전국 확산…지급액·기준 ‘제각각’”, 2019.4., <https://www.yna.co.kr/view/AKR20190426080500054?input=1195m>

5) 국회의원 윤소하의원실, <농어민기본수당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방향과 과제>, 2019, p8

구분	사업명	사회 보장제 6)	자체 조례	대상	지급내용	지급인원 (‘23)
전라북도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	협의완료	‘19.10.11.	농가	농가당 60만원/연	농 115,756호 임 34호 양봉 314호 어 2,246호
전라남도	농어민공익수당	협의완료	‘19.09.30.	농가	농가당 60만원/연	농 199,684호 임 235호 어 11,858호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협의완료	‘21.01.04.	농가	농가당 60만원/연	225,473호 (농림어가 포함)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협의완료	‘20.06.25.	농가	농가당 30만원/연 (공동경영주 60만원/연)	농 235,410명 어 6,951명 임 258명
제주도	농민수당지원사업	협의완료	‘20.07.15.	농업인	농업인당 40만원/연	41,855명
울산광역시	농민수당지원	협의완료	‘23.01.01.	농가	농가당 60만원/연	10,824호
광주광역시	농민공익수당	협의완료	‘23.02.23.	농가	농가당 60만원/연	7,100호
새종로발차시	농업인수당 지원	협의완료	‘23.03.06.	농가	농가당 60만원/연	5,249호
인천광역시	농어업인수당	협의완료	‘21.09.30 (‘24.02.23.)	농가	농가당 60만원/연	(‘24년 도입)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농업경영정책과(2024.8.2. 제출)

□ 한편, 농어민수당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문제 제기는 2016년 무렵부터 제기되었는데, 당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제도의 한계가 드러남에 따라 이를 극복하는

6)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는 국가 전체적인 사회보장제도의 정합성 유지를 통한 조화로운 복지체계를 목적으로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하는 제도임

방안으로 농어민수당 도입 논의가 대두된 것임⁷⁾.

○ 당시 기본형공익직불제도 중 고정직접지불금⁸⁾은 면적을 기준으로 지급되어 농지면적이 큰 대농에게 유리해 일반 농가의 소득 증진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 전체 직불금의 82.6%가 쌀직불금으로 편중되는 등 쌀소득보전직불금 위주의 제도로 쌀 과잉 생산을 심화시킨다는 문제점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음⁹⁾.

○ 이에 따라 전부 개정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2019.12.31. 전부개정)」은 기존의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공익직접지불제도(기본형공익직접지불제도와 선택형 공익직접지불제도)로 개편하였음.

기본형공익직불제도는 ① 거주, 생계, 농업경영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과 ② 그 밖의 농업인들에게 지급하는 면적직접지불금으로 구성됨.

기본형공익직불제도는 농업인이 농지에서 농사를 지으며 생성되는 공익기능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한 것이므로 공익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한 토지는 기본적으로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가 가능’한

7) 송원규, 농민수당과 농민기본소득 :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는 운동 다양화로 인한 긴장과 갈등, 농촌사회, p333-346

8) 고정직불금은 농업 경영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농가에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로, 지급액은 농가가 보유한 농지 면적에 따라 결정되었음.

9) 박경철, “농어업·농어촌의 공익기능 활성화를 위한 직접보상 필요성”, <농어민 기본수당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방향과 과제(윤소하의원실 주최 토론회)>, 2019, P20

농지여야 한다는 제약이 있음.

선택직불은 기본직불 준수 의무에서 제공할 수 있는 공익 수준을 넘어서는 공익을 제공하는 활동에 대한 협약 이행을 농업인 혹은 농촌 주민이 자발적으로 선택하여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 공익직불제도의 도입으로 소농직불금의 경우 품목·면적과 무관하게 정액으로 지급되고, 면적직불금의 경우에도 품목과 관계없이 중소농에 유리하도록 역진적 단가체계를 적용하였음¹⁰⁾.

○ 그러나 기본형 직불제도의 경우, 단순히 농사를 짓는 것 외에도 환경 보전, 농촌 공동체 활성화 등 다양한 공익적 의무이행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격요건을 충족하기 쉽지 않다는 점, 2022년부터 중소농 소득보전효과가 둔화되고 있다는 점¹¹⁾ 등은 여전히 농어민수당 도입을 주장하는 근거가 될 수 있어 보임.

□ 공익직불제와 농어민수당의 유사성은 두 제도 모두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이라는 목표를 이루려는 목적으로 소득을 직접 지원한다는 점인데, 이로 인해 두 제도간 중복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음¹²⁾.

10) 손동희, “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직불 사업 평가”, 국회예산정책처, 2024.7., p6

11) 농림축산식품부는 기본형 직불금 지급의 형평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십분위수를 설정하였는데 (십분위수가 낮을수록 중소농 소득보전효과가 높은 반면 클수록 낮은 수준임), 2020년 8.55배에서 2021년 8.43배로 감소하였으나, 2022년 8.93배, 2023년 11.06배로 증가하였음<손동희, 위의 책 p44 참조>

12) 유찬희, “농민수당·농민기본소득·공익직불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GS&J 인스티튜트, 2021

재정적 유인을 통해 공익 기능 증진에 필요한 기능을 계속하게끔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는 공익직불제와 유사하게 농어민수당 역시 ‘공익적 기능 증진’, ‘삶의 질 향상’, ‘지역 경제 활성화’, ‘소득안정도모’ 등을 이루고자 수당을 지급함.

- 다만, 공익직불제도는 농업농촌의 공익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한 준수조건을 이행”하는 농가에 직접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이고, 농어민수당은 농민을 대상으로 특별한 조건 없이 지급하는 것이라는 점에 차이가 있음.
- 공익직불제는 중소규모 농·어가의 소득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지만, 환경보호·생태보전 등 의무사항이 있어 이를 위반할 경우 직불금이 감액이 되고 있으므로, 의무사항이 없는 제정안의 농어민수당과는 다른 점이 있음.

[공익직불제-농어민수당지원법안-농업인수당(지자체) 비교]

구분	공익직불제	농어민수당지원법안	농업인수당(일부지자체)
목적	- 중소농가의 소득안정 및 농업의 공익적 기능 확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농어민 수당 일부를 국가가 보전	- 농가인구 감소 최소화 및 소득보장
지원대상	- 기본 의무를 준수하는 농업경영체(기본형) 및 추가적인 공익 창출(선택형) 농가	- 1년 이상 농촌지역 거주하고 농업경영정보 등록 경영주, 농업종사자 및 영농·영여조합 소속 농업종사자	- 1년 이상 관내 거주,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이 포함된 농가
농지요건	- 일정기간(논: '98~'00 등) 동안 이용, 1회 이상 직불금 지급 실적이 있는 농지	- 해당없음	- 해당 없음
지급방식	- 면적 비례 지급, 면적 작을수록 높은 단가 적용(소농직불금; 130만원)	- 월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절반 이상의 금액을 매월 현금으로 지급	- 농가대상 30~80만원 동일액 지급
준수사항	- 환경, 공동체 등 5개분야 17개 사항	- 공익적 책무 선언적 부과	- 공익적 책무 선언적 부과
이행점검	- 전담기관(농관원) 지정, 준수사항 이행점검 및 미이행시 감액 조치	- 이행점검 체계 부재	- 이행점검 체계 부재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농업경영정책과

□ 농업 보호·육성에 관해 우리 헌법에서 직접 규정¹³⁾을 두고 있고,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 증진은 국가가 수행해야 할 역할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입법취지에는 공감할 수 있음.

제정안 입법여부에 대한 판단은 현재 지급되고 있는 공익직불제, 「기초연금법」상 기초연금, 지자체의 자체적인 농어업인 수당지급 외에도 추가적으로 기초연금을 통하여 농어업인에게 다층적인 소득

13) 헌법 제123조 ①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안전망을 구축할 필요성과 시급성 등에 대한 선행적인 논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전제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해외에서는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 유지·증진 및 농어업인의 생활 안정 지원을 대부분 농업인 대상 직접지불제 형태로 지원하고 있음.

프랑스, 독일, 일본에 농업인 연금제도가 있으나, 농업 종사 기간 동안 연금을 정기 납부하고 은퇴 후 연금을 수령하는 사회보험이라는 점에 차이가 있음.

* (EU) 단일지불제(농업인 소득지지, 환경보전 의무 부여), Eco-scheme(기본 준수 의무를 넘어서는 추가적인 환경·생태 보호 활동 보상)
(미국) 농업 환경보전 프로그램(농업인의 환경보전 활동 보상)
(일본) 환경보전형직불(농업인의 환경보전 활동 보상)

※ 우리나라는 해외 농업인 연금제도와 유사한 목적으로 ‘농지이양은퇴직불제도(고령농의 농지 매도를 조건으로 은퇴 후 생활안정 지원 직불금 지급)’ 시행 중
- 3년 이상 농지를 소유한 65~79세 농민이 농지를 이양(매도 또는 매도 조건부 임대)하면 최대 10년간, 84세까지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됨. 지급금액은 매도는 1ha당 매월 50만원(연간 600만원), 매도 조건부 임대는 1ha당 매월 40만원(연간 480만원)이며 최대 4ha까지 지급

※ 자료 : 임소영, 김수린, “주요국 농업인 연금제도 사례와 시사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2

- 아래에서는 2개의 제정안을 조문별로 비교·검토하고자 함.

2. 제20대·제21대국회에서 논의 과정

□ 제20대국회에서 윤소하의원이 「농어업인 기본수당법안」을 발의(2019.10.7.)하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상정 및 법안소위에 회부(2019.11.8.)되었으나,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임기만료폐기되었음.

○ 당시 윤소하의원안은 문대림의원안 및 박덕흠의원안과 많은 부분에서 유사하나,

제5조(교육의 의무)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에게 필요한 읍·면·동별로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기본수당을 지급받는 농어업인은 의무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었음.

□ 제21대국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총 6건의 관련 법률안이 발의되었으며, 이 중 4건의 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차례에 걸쳐 논의되었음.

제명	제안자	발의일 (회부일) (상정일)	법안심사 소위원회 심사 경과	비고
농업인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박덕흠의원 등 12인	2020-06-01 (2020-06-29) (2020-09-16)	2020-09-22 2021-02-18 2021-02-23	
농어업인 공익수당지원법안	윤준병의원 등 30인	2020-06-04 (2020-06-29) (2020-09-16)	2024.5.29. 임기만료폐기	

제명	제안자	발의일 (회부일) (상정일)	법안심사 소위원회 심사 경과	비고
농어업인 기초연금법안	이만회의원 등 13인	2020-06-26 (2020-06-29) (2020-09-16)		
농어민수당 지원법안	강은미의원 등 11인	2020-11-04 (2020-11-05)	2021-02-18 2021-02-23 2024.5.29. 임기만료폐기	소위 직회부 '21.02.09.
농어촌주민 기본수당 지원법안	양정숙의원 등 11인	2021-03-26 (2021-03-29)	2024.5.29. 임기만료폐기	소위 직회부 '21.06.28.
농민기본소득 법안	허영의원 등 66인	2021-06-22 (2021-06-24)	임기만료폐기	소위 직회부 '21.09.10.

※ 자료 : 의안정보시스템(<https://likms.assembly.go.k>)

□ 논의된 사항을 주제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법 제정 취지) 농어촌 지역의 공동체 해체와 농어촌 소멸 위
기론이 대두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기초연금 또는 공익수
당 지급을 통해 농어가의 소득안전망을 확충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임.
- (명칭 논의) 기초연금, 공익수당, 농어민수당 등 다양한 명칭으
로 발의되었음.
- (농어업 정의) 2019년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 개정에 따라
어업 및 양식업 구분하고 있으므로 양식업이 제외된 제정안의

규정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 (지급 대상자) 신청연도의 직전 1년 이상 해당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를 조건으로 하여 각각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①안, 이만희) 10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한 65세 이상 농어업인

(②안, 박덕흠/강은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③안, 윤준병)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주 및 농어업종사자와 영농(영어)조합법인에 1년 이상 소속된 농어업종사자

- (논의 필요사항) 공익직불사업은 법인이 포함되어 있으나, 기초연금 지급 시 법인 포함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지급금액) 개정안들은 기초연금 지급금액을 법률에서 직접 최저 월 10만 원 이상 지급하도록 명문화하고 있음.

- (지급방식) 지급방식은 각각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①안, 이만희) 대통령령으로 위임

(②안, 박덕흠/강은미) 현금 또는 해당 지역에서만 사용가능한 지역상품권 등 방법으로 지급

- (기초연금에 관한 심의의결기구) 기초연금에 관한 심의의결기구로 각각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①안, 이만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②안, 박덕흠/강은미) 각각 농업인 기초연금위원회, 농어업인공
익수당위원회 및 농어민수당위원회를 별도로 설치

- (검토 필요사항)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은 유사·중복 위원회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는 점을 고
려할 때 현재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를 활용하여 심의·의결할
필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국가재정 지원) 국가의 재정 지원과 관련하여 각각 다음과 같
이 규정하고 있음.

(①안, 이만희) 100%,

(②안, 박덕흠/강은미) 40% 이상, 90% 이하의 범위

(③안, 윤준병) 50% 이상, 90% 이하의 범위에서 국가가 지원

- 소요 예산 : (①안, 이만희) 1조 4,760억원(어업 제외)이나, '19년
기준 65세 이상 123만명을 대상으로 12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가정해서 산정한 결과로, 지급 대상자 기준을 고려하지 않고
추정한 수치임.

○ (정부 입장) 지자체별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추진
할 필요가 있음.

- 농업인 수당은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으나, 현재 공익직

불제가 새로 도입되어 기존 공익직불제도와와의 관계 그리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을 지켜보면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고 부처 협의 과정에서도 기재부와 복지부가 반대의견을 제시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3. 관계부처 의견

(1)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 제정안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으며, 기존제도와 중복성 문제 및 충돌가능성을 이유로 소극적 입장을 제시하고 있음.
- 첫째, 제정안의 목적과 유사한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2020년부터 공익직불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농업직불제를 5조 원 규모로 확대 추진하는 상황이며,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수산 공익직불제를 2021년부터 추진하고 있음¹⁴⁾.
- 둘째, 「기초연금법」¹⁵⁾에 근거하여 만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는 기초연금은 이미 농어업인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중복지원을 할 것인지 그 관계를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음.¹⁶⁾

14) 2024년도 농업직불제의 예산규모는 3조 1,000억원이고, 수산분야 공익직불제도는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어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을 대상으로 2021년 3월 1일부터 지급되고 있으며 2024년도 예산 규모는 1,062억원임.

15) 「기초연금법」 제3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 ①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경우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한다.

16) 매월 최대 30만원 현금 지급

- 「기초연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 기초연금 개요>

□ (사업개요) 기초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공적 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현세대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을 보장 및 생활 안정 지원('14.7월 시행)

□ (지원대상 및 내용) 전체 65세 이상 노인 70%를 대상으로 지급

-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금액(선정기준액)을 매년 12월 말에 확정
 - 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해당 연도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

① (선정기준액) 노인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생활 실태, 주택 공시가격,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

< 기초연금 연도별 선정기준액 >

연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단독가구	137만원	148만원	169만원	180만원	202만원	213만원
부부가구	219.2만원	236.8만원	270.4만원	288만원	323.2만원	340.8만원

② (소득인정액)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 소득은 근로·사업·재산·공적이전소득 등을 반영하고, 재산은 일반재산·금융재산 등을 반영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begin{aligned}
 & \left\{ \begin{aligned} & \{(\text{일반재산} - \text{기본재산액 공제}^*) + \\ & (\text{금융재산} - 2,000\text{만원 공제}) - \text{부채}\} \\ & \times \text{소득 환산율}(4\%) \div 12\text{개월} + P^{**} \end{aligned} \right. \\
 & + (\text{근로소득} - 110\text{만원 공제}) \times 70\% + \text{기타소득}
 \end{aligned}$$

* (기본재산액) 주거유지 비용 공제(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 (P값) 사치품으로 분류되는 고급 회원권(골프, 승마, 콘도 등) 및 고급 자동차(4,000만원 이상)는 가액 전액을 소득 반영

□ (지원내용) '24년 기준 월 최대 334,810원(부부가구의 경우 각각 20% 감액)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셋째, 각 지자체에서 농업인수당을 도입하여 추진 중인데, 지자체 별 농산업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추진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기획재정부

- 농·어업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당을 신설하는 것은 기존 제도와 의 유사·중복성, 타업종과의 형평성, 재정여건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하 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또한 농어업인 기초연금 제도 도입 시 공익직불제, 기초연금 등 기 존 소득보전 제도의 축소, 통폐합 또는 폐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 인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음.

(3) 행정안전부

-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대규모 재정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으로, 별도 재원조달 방안 없이 추진 시 지방재정 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는 입장임.

- * (지방재정자립도 전국 평균) '20: 50.4% → '21: 48.7% → '22: 49.9% → '23: 50.1% → '24: 48.6%
- * (국고보조사업 대응지방비) '20: 28.6조 → '21: 30.8조 → '22: 33.3조 → '23: 33.3조 → '24: 34.5조

아울러, 공익직불제 등 기존 제도와의 유사성, 타 업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제도 도입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임.

(4) 보건복지부

- 「기초연금법」에서 이미 농업인을 포함하여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법률 제명에서 ‘기초연금’을 삭제하는 등 제명을 변경하여 혼동을 방지할 필요가 있고, 기초연금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5) 강원도

- 법안 제정을 통하여 농어민을 지원하려는 취지는 공감하나, 지자체의 세수 부족과 자립도 등 재정적 여건을 고려할 때 정부의 100% 지원 없이는 지자체의 재원 부담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임.

4. 제정안의 구성체계

- 두 건의 제정안은 농어업인에게 수당(문대림의원안: 농어민수당, 박덕흠의원안: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수당의 신청 및 지급, 지급 대상 및 방법 등 관련 제도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문대림의원안은 총 6개의 장, 29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었으며, 박덕흠의원안은 총 7개의 장, 22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었음.
- 문대림의원안은 박덕흠의원안과 달리, 농어민수당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제2장을 별도로 두고 있음.

구분	문대림의원안	구분	박덕흠의원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와 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농어민의 책무)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주관) 제3조(정의)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2장 위원회의 설치 등	제6조(농어민수당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위원회의 업무 등) 제8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신분보장) 제10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11조(농어민수당심의위원회)		-
제3장 농어민수당 의 신청 및 지급	제12조(수당 수급권자의 범위) 제13조(수당 지급신청) 제14조(정보의 제공) 제15조(자료조사 등) 제16조(수당 지급의 결정 등) 제17조(수당 지급 시기 및 방법 등)	제2장 농어업인 기초연금 지급대상 및 지급방법 등	제5조(지급대상) 제6조(지급금액 및 지급방법)
		제3장	제7조(지급신청)

구분	문대림의원안	구분	박덕흠의원안
	제18조(수당 수급계좌 및 압류금지)	농어업인 기초연금 신청 및 지급결정 등	제8조(정보의 제공) 제9조(자료조사 등) 제10조(지급의 결정 등)
제4장 사후관리	제19조(수당 지급 정지) 제20조(수급권의 상실) 제21조(수당의 환수) 제22조(신고) 제23조(환수금의 고자·독촉 및 장수) 제24조(농어민수당의 특례)	제4장 농어업인 기초연금 수급권자 사후관리	제11조(지급정지) 제12조(수급권의 상실) 제13조(신고) 제14조(환수) 제15조(환수금의 고자·독촉 및 장수)
제5장 보칙	제25조(이의신청) 제26조(시효)	제5장 농어업인 수급권자의 권리보호	제16조(수급권의 보호) 제17조(이의신청)
제6장 벌칙	제28조(벌칙) 제29조(과태료)	제6장 보칙	제18조(시효) 제19조(끝수의 처리) 제20조(비용의 부담)
		제7장 벌칙	제21조(벌칙) 제22조(과태료)

[제정안 주요내용 비교]

구분	농어민수당 지원법안 (문대림 의원안)	농업인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박덕흠 의원안)
목적	○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 지속가능한 지역농어업의 발전 도모(제1조)	○ 농업인 안정적 소득기반 제공,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제1조)
지원 대상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주 및 농업종사자, 영농어조합법안에 1년 이상 소속된 농어업 종사자(제12조제1항) ○ 1년 이상 농어촌지역에 거주 (제12조제2항)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제5조제1항) ○ 1년 이상 농촌지역에 거주 (제5조제2항) ○ 수급권자 가구의 종합소득금액이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는 지급대상에서 제외(제5조제4항)
지급 방식	○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절반 이상의 금액을 매월 지급(제17조제2항) ○ 정부 40% 이상 부담(제27조제1항) ○ 현금, 관할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다 른 방법(제17조제2항)	○ 연 120만원 이상 지급(제6조제1항) ○ 정부 40~90% 부담(제20조제1항) ○ 현금, 지역 상품권 등(제6조제3항)
위원 회	○ 국무총리 소속으로 농어민수당위원회를 둠(제6조) - 시·도지사, 특별자치시·도지사 소속으 로 농어민수당심의위원회를 둠(제 11조)	○ 농업인기초연금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함 (제7조제5항)
책무	○ 마을 공동체 활동 참여, 농어촌의 생태 계 보존 및 전통문화 계승, 영농폐기물 의 자발적 처리 등을 위해 노력(제4조) 공익적 책무 선언적 부과, 이행점검 체계 부재(공통)	○ 농어촌의 생태계 보존, 마을 환경개 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에 적극 참 여(제5조)
다른 법률 과의 관계	○ 농어민수당과 관련하여 다른 법에 특 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름 (제5조)	-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 (2024.8.2. 제출)

5. 주요내용별 검토

(1) 총칙[문대림의원안 제1장(제1조~제5조), 박덕흠의원안 제1장(제1조~제4조)]

- ☐ 두 건의 개정안은 농어민(농어업인)을 대상으로 농어민수당(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통해 지역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가. 제명

- ☐ 문대림의원안은 법제명에서 농어민수당이라는 용어를,
박덕흠의원안은 기초연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농어민수당 및 기초연금은 유사한 개념으로 보임.

문대림 의원안	박덕흠 의원안
농어민수당 지원법안	농업인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 통상적인 의미에서 연금이란 본인이 소정의 기여금을 납부하고 퇴직 후 일정 기간 계속하여 받는 급여로 볼 수 있으나, 제정안에서의 기초연금은 국민의 세금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고,
「기초연금법」상 기초연금¹⁷⁾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혼동을 줄 수 있는 사항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이하에서는 ‘농어민수당’으로 통칭함).

17) 기초연금은 기초연금법'에 근거한 저소득층 노인, 즉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만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공적연금을 말함.

나. 목적

- 제정안의 목적과 관련하여 두 제정안은 다음과 같은 구성으로 규정되어 있음.

농어민수당 지원법안 (문대림 의원안)	농업인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박덕흠 의원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농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발전 시켜온 농어민에게 수당을 지급하여 농어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지역농어업의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농어민수당의 일부를 국가가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농어업인에게 농업인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 소득기반을 제공하고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 목적규정은 입법의 취지와 핵심 사항을 종합적·포괄적으로 표현하여 각 조항의 운용과 해석의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함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기초연금법」은 법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박덕흠의원안의 목적 규정과 구조가 유사함.

「기초연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 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 주관

□ 박덕흠의원안은 제2조(주관)에서 농어업인 기초연금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주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어업인의 소득 제고의 역할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주관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농업인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박덕흠 의원안)

제2조(주관) 이 법에 따른 농어업인 기초연금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주관한다.

라. 농어업인 정의

□ 박덕흠의원안은 ‘농어업인’에 임업인을 포함하고 있으나, 문대림의원안은 이를 포함하지 않음.

○ 현재 일부 지자체의 경우 임업인에게도 농어민수당을 지급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문대림의원안은 ‘농어업, 농어민, 농업경영체, 어업경영체, 농어민수당, 수급권자, 수급자’를 정의하고 있고,

박덕흠의원안은 ‘농어업, 농어업인, 농어업인 기초연금, 농어업경영체, 농어촌, 종합소득금액’을 정의하고 있음.

농어민수당 지원법안 (문대림 의원안)	농업인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박덕흠 의원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 및 마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u>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u>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가. 어업: <u>수산동식물을 포획(捕獲)·채취(採取)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산업</u> 나. 어획물운반업: <u>어업현장에서 양륙지(揚陸地)까지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산업</u> 다. 수산물가공업: <u>수산동식물 및 소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품, 사료나 비료, 호료(糊料)·유지(油脂) 등을 포함한 다른 산업의 원료·재료나 소비재를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산업</u> 라. 수산물유통업: <u>수산물의 도매·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배송·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u> 마. 양식업: <u>「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산업</u> 2. “농어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과 「수산업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을 말한다. 2. “농어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농어민수당 지원법안 (문대림 의원안)	농업인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박덕흠 의원안)
· 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양식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어업인”이란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거나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2호의 양식업자와 같은 조 제13호의 양식업종사자가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18)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4. “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어업경영체를 말한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6. “어업경영체”란 어업인과 어업법인을 말한다. 7. “농어업경영체”란 농업경영체와 어업경영체를 말한다. 5. “농어민수당”이란 농어민의 소득안정과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임업인”이란 임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3. “농어업인 기초연금”이란 농어업인의 생활안정과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 유지·증진을 위하여 제5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을 말한다. 4.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업경영체와 어업경영체를 말한다. 5.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어촌”이란 하천·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하여 있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농어민수당 지원법안 (문대림 의원안)	농업인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박덕흠 의원안)
6.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라 농어민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7. “수급자”란 이 법에 따라 농어민수당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중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면의 전 지역 나. 동의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6. “종합소득금액”이란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가. 이자소득 라. 근로소득 나. 배당소득 마. 연금소득 다. 사업소득 바. 기타소득

마. 책무

- **문대림의원안**은 제3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제4조에서 농어민의 책무를 각각 규정하는 반면,
- 박덕흠의원안**은 제4조(국가등의 책무)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농어민의 책무를 함께 규정하고 있음.

농어민수당 지원법안 (문대림 의원안)	농업인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박덕흠 의원안)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민수당이 도시와 농어촌 간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농어민의 기본적인 사회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결정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 기초연금이 농업인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수준이 되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매년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치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은 농업인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다.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의 설치 등) 정부는 공익직접지불제도에 따른 직접지불금의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③ 농업인 기초연금을 지급받는 농업인은 농업과 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하여 농어촌의 생태계 보존, 마을 환경개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제4조(농어민의 책무) ① 농어민수당을 지급받는 농어민은 농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농어촌의 생태계 보존 및 전통문화 계승, 영농폐기	

농어민수당 지원법안 (문대림 의원안)	농업인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박덕흠 의원안)
물 및 해양쓰레기의 자발적 처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농어민은 제1항에서 규정한 책무를 실천하기 위하여 공동 활동을 할 수 있다.	야 한다.

- 또한 책무 규정에서 **문대림의원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재원을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 박덕흠의원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은 농어업인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음.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의 설치 등) 정부는 공익직접지불제도에 따른 직접지불금의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26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양곡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수입이익금 제13조의2(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추천을 받아 양곡을 수입하는 자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을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가격과 수입가격의 차액의 범위에서 수입이익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입이익금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기업예산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양곡관리특별회계,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 또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 납입하여야
--

한다.

③ ④ (생략)

3. 제27조에 따른 차입금

4. 기금의 운용수익금

5.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5조제2항제6호에 따라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의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으로부터 받은 전입금 및 일반회계로부터 받은 전입금

6. 이 법에 따른 징수금 및 과태료

7.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 이는 국민연금기금을 기초연금 지급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기초연금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유사함¹⁹⁾.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은 정부 출연금과 「양곡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수입이익금 등을 통해 조성되어 공익직접지불제도에 따른 직접지불금 지급 및 이행점검 등의 사업에 집행되고 있음.

19) 「기초연금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연금이 제1조의 목적에 따라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데 필요한 수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재원(財源)을 조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연금법」 제10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국민연금기금은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연금의 지급에 따라 계층 간 소득역전 현상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근로의욕 및 저축유인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 조성 재원 및 용도 >

기금의 조성 재원	기금의 용도
1. 정부의 출연금 2. 「양곡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수입이익금 3. 제27조에 따른 차입금 4. 기금의 운용수익금 5.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5조 제2항제6호에 따라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의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으로부터 받은 전입금 및 일반회계로부터 받은 전입금 6. 이 법에 따른 징수금 및 과태료 7.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1.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 2.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3. 제17조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경비 4.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5. 그 밖에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및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박덕흠의원안은 농어업인 기초연금 제도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재원을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으로 충당할 경우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이 고갈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농어업인 기초연금은 조세로 운영하도록 하는 취지로 보임.

바. 다른 법률과의 관계

- 문대림의원안은 농어민수당과 관련하여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여 이 법이 농어민수당에 대하여 특별법적 성격을 가진다는 것을 제시함.

박덕흠의원안은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하지 않았음.

농어민수당 지원법안(문대림 의원안)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농어민수당과 관련하여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위원회의 설치 등[문대림의원안 제2장(제6조~제11조)]

- 문대림의원안은 농어민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농어민수당위원회를 두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어민수당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려는 것임.

농어민수당 지원법안(문대림 의원안)

제2장 위원회의 설치 등

제6조(농어민수당위원회의 구성 등) ① 농어민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농어민수당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농어민 단체의 대표

4. 농어업 관련 기관의 대표

5. 농어업 분야에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농어민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성한다. 다만, 위원자격 등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로 구성하기 어려운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농어민수당 지원법안(문대림 의원안)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위원회의 업무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농어민수당정책의 기본방향 및 지급에 관한 사항
2.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에 관한 사항
3. 농어민수당의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4. 농어민수당과 관련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농어민수당에 관한 관련 부처의 협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고, 설명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관련 부처 사이의 협조 사항을 정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농어민수당정책조정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④ 그 밖에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 재임한다.

제9조(위원의 신분보장)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위원의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위원회를 운영하는 부

농어민수당 지원법안(문대림 의원안)

서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1조(농어민수당심의위원회)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어민수당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한편, 박덕흠의원안은 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별도의 조문을 구성하는 대신, 제6조(지급금액 및 지급방법)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업인 기초연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어업인 기초연금의 지급금액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농어업인 기초연금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농업인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박덕흠 의원안)

제6조(지급금액 및 지급방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업인 기초연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어업인 기초연금의 지급금액을 정하되, 연 120만원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금액의 적용기간은 지급금액이 결정된 연도의 1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

③ 농어업인 기초연금은 현금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지역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어업인 기초연금의 지급시기 및 지급금액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농어업인 기초연금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농어업인 기초연금 지급 시기·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행정안전부 의견

□ 농어민수당위원회는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또는 농어업·농어촌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설치·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농어민수당심의위원회 운영은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협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를 설치하며,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와 국민경제의 기반인 농어업과 농어촌의 발전 및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대통령 소속으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실현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농어촌 지역발전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3. 농어촌 생태·환경·자원의 체계적 보전 및 효율적 이용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기초한 자율 농정 수립에 관한 사항
5.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통한 국민의 먹거리에 관한 사항
6. 농어업과 농어촌의 다원적 가치 실현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7.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한 사항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실천계획과 추진상황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대통령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

2) 검토의견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은 유사·중복 위원회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으며, 분과위·전문위원회 등의 체계로 연계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²⁰⁾.

□ 2022년 정부는 운영실적이 저조하거나 기능이 중복되는 유사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효율적인 정부체계를 구축하고자 부처별 자체정비안을 마련하고, 민관합동진단반 확인·점검 등을 거쳐 정비안을 확정하였으며, 법률 개정이 필요한 위원회를 일괄 정비하는 내용의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2024.7.23.)하였음²¹⁾.

○ 행정안전부의 “2022년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²²⁾”에 따르면, 위원회 설치근거 법령이 다르더라도, 설치목적 및 기능이 유사하거나 심의대상이 동일·유사하여 분과위를 활용하는 등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 위원회 간 통합을 하도록 하였음.

○ 현재 국무총리 소속으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위원회’가 설치·운영중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

20)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성격·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복수의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의 체계로 연계하여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1) [2202144]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현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2024.7.24.)

22) 행정안전부, 위원회 정비 법령개정 부처합동 추진계획(안), 2022.7.22.

촌 지역개발위원회'에서는 농어업인들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기본계획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음.

농어민수당도 농어촌의 복지 증진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의 범주에 포함되므로 이에 관한 심의가 가능해 보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0조(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① 농어업인들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정책을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2.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 실적에 대한 점검·평가 결과

3. 해당 연도 시행계획

3의2.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서에 관한 사항

4.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정도

5. 그 밖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개발 정책 등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농어업인들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문화예술 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1. 농어업인들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정책의 기본 방향

2. 농어업인들의 복지증진 및 사회안전망 확충에 관한 사항

2의2. 고령 농어업인에 대한 소득안정화 및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농어촌의 교육·문화예술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4. 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4의2. 농어촌의 의료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5. 농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에 관한 사항

6. 제31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7.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확대에 관한 사항
 8. 농어촌 거점지역의 육성에 관한 사항
 9. 필요한 자원의 투자계획 및 조달에 관한 사항
 10. 농어촌서비스기준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의 지역개발 등에 관한 사항
- ② 정부는 기본계획을 세울 때에는 제10조에 따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3) 농어민수당의 신청 및 지급[문대림의원안 제3장(제12~18조) ,

농어업인 기초연금 지급대상 및 지급방법 등[박덕흠의원안 제2장(제5조·제6조), 제3장(제7조~제10조)]

- 두 건의 제정안은 농어민수당의 수급권자(지급대상), 지급신청 및 지급결정, 지급시기 및 방법, 지급금액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가. 지급주체, 지급의 신청 및 결정

- 농어민수당을 지급하는 주체에 대하여

문대림의원안은 수급권자 또는 대리인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지급신청기관의 장’)에게 수당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13조제1항), 지급신청기관의 장은 매월 정기적으로 농어민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제17조제1항).

박덕흠의원안은 수급권자는 지급신청기관의 장(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급을 신청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어업인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안 제5조제1항).

농어민수당 지원법안 (문대림 의원안)	농업인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박덕흠 의원안)
제3장 농어민수당의 신청 및 지급	제2장 농어업인 기초연금 지급대상 및 지급방법 등

농어민수당 지원법안 (문대림 의원안)	농업인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박덕흠 의원안)
제13조(수당 지급신청) ① 수급권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리인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지급신청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농어민수당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수급권자 또는 대리인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급신청기관의 장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농어민수당의 지급신청 방법·절차 및 제2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지급대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인(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게 농어업인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①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용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농어업경영정보”라 한다)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농업경영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농지·축사·임야·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농산물, 생산방법 및 가축사육 마릿수 등 농업경영 관련 정보 및 용자·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농업경영정보”라 한다) 2. 어업경영체: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27조에 따른 어선·양식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수산물, 생산방법 및 어업생산규모 등 어업경영 관련 정보 및 용자·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 등) ①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생산자단체”라 한다)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지급의 결정 등) ① 지급신청기	제10조(지급의 결정 등) ① 지급신청기관의

농어민수당 지원법안 (문대림 의원안)	농업인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박덕흠 의원안)
관의 장은 제15조에 따른 조사를 거쳐 농어민수당 수급권의 발생·변경·상실 등을 확인한 후 시·도지사에게 농어민수당 지급신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직접 조사와 농어민수당 수급권의 발생·변경·상실 등을 확인한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어민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아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자가 결정되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급신청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수급자등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직접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수급자등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농어민수당 수급권의 발생·변경·상실 등의 결정 절차 및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은 제9조에 따른 조사를 한 후 농업인 기초연금 수급권의 발생·변경·상실 등을 결정한다. ② 지급신청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수급권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수급권의 발생·변경·상실 등의 결정 통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나. 지급대상 및 지급 제외대상

□ 농어민수당의 지급대상자와 관련하여 2개의 제정안은 지급대상자가 신청연도의 직전 1년 이상 해당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면서,

문대림의원안은 ①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주 및 농어업종사자와 ②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1년 이상 소속된 농어업종사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박덕흠의원안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인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농어민수당 지원법안 (문대림 의원안)	농업인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박덕흠 의원안)
제3장 농어민수당의 신청 및 지급 제12조(수당 수급권자의 범위) ① 농어민수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의 경영주 또는 농업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얻은 소득이 주된 소득인 사람 가. 논농업 또는 밭농업으로 농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제2장 농업인 기초연금 지급대상 및 지급방법 등 제5조(지급대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인(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게 농업인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①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용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농어업경영정보”라 한다)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농어민수당 지원법안 (문대림 의원안)	농업인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박덕흠 의원안)
나. 임업용 종자·묘목을 재배하거나 육림업, 임산물 생산·채취업에 종사하는 경우 다. 축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경영체의 경영주 또는 어업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얻은 소득이 주된 소득인 사람 가.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경우 나.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경우 다.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경우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1년 이상 소속된 농어업종사자 ② 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는 신청연도의 직전 1년 이상 해당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한다.	1. 농업경영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농지·축사·임야·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농산물, 생산방법 및 가축사육 마릿수 등 농업경영 관련 정보 및 용자·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농업경영정보”라 한다) 2. 어업경영체: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27조에 따른 어선·양식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수산물, 생산방법 및 어업생산규모 등 어업경영 관련 정보 및 용자·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 등) ①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생산자단체”라 한다)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수급권자는 신청연도의 직전 1년 이상 해당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고 있으면 농업인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공무원연금법」 제28조에 따른 급여 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급여

농어민수당 지원법안 (문대림 의원안)	농업인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박덕흠 의원안)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어민수당 수급권자의 자격 및 수급권의 산정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군인연금법」 제7조에 따른 급여 4. 「별정우체국법」 제24조에 따른 급여 ④ 수급권자 가구의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는 농업인 기초연금의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 ⑤ 제1항에 따른 농업인 기초연금의 지급대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농업경영체 등록 제도는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 농촌의 다양한 지원, 보조금을 받기 위해 농업경영체가 본인의 농업경영정보를 자발적으로 등록하는 제도를 말함.

등록되는 정보는 농지·축사·임야·원예시설·어선·양식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농수산물, 생산방법 및 가축사육 마릿수, 어업 생산규모 등의 정보를 포함함.

- 농업경영체는 농업인(농업경영주 및 농업종사자)과 농업법인(대표 및 직원)을 의미하므로 문대림의원안은 해석상 농업법인의 대표자와 종사자가 포함되는 것으로 보임.
- 참고로 공익직불사업에서는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지급대상

농지 등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을 지급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농업법인이 포함되어 있으나²³⁾,

농어민수당 지급 시 그 목적에 비추어 농업법인을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제정안의 농어민수당 지급대상자 관련 비교]

구분		경영정보등록여부							
		농업인				농업법인			
		경영주인 농업인		경영주 외의 농업인		대표자		농업종사자	
수급권자		등록	미등록	등록	미등록	등록	미등록	등록	미등록
(문대림의원안) 농어민 수당지원법안	·(1호 및 2호)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의 경영주 및 농어업종사자	○	×	○	×	○	×	○	×
	· (3호) 영농-어조합법인에 1년 이 상 소속된 농어업종사자	×	×	×	×	×	×	○	○
(박덕흠의원안) 농업인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	×	○	×	×	×	×	×

※ 자료 : 의안원문을 토대로 재구성

○ 추가적으로, 제정안의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인’이라고 규정되어 있어, 외국인에 대한 제한은 없는 것으로 해석할

23)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공익직접지불제도의 적용대상) ① 공익직접지불제도에 따른 직접지불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농업인등으로 한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①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용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농어업경영정보”라 한다)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농업경영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농지·축사·임야·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농산물, 생산방법 및 가축사육 마릿수 등 농업경영 관련 정보 및 용자·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농어업경영정보”라 한다)

여지가 있음.

- 문대림의원안은 수당 수급권자의 범위에 임업 종사자를 명시하고 있는 반면, 박덕흠의원안은 제3조(정의) 중 ‘농어업인’을 정의하며 임업인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두 제정안 모두 임업인도 수급권자에 해당함²⁴⁾.

-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제정안에 따른 농어민수당 지급대상자는 최근 5년(2020~2024.5월말)간 총인구 수 대비 등록 농업인·임업인·어업인 수의 평균 비율을 바탕으로 추계기간 동안의 각 경영체 수를 산출하였을 때 약 260만명으로 예상된다고 함.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 농업경영정보 등록 경영주·경영주외농업인 및 영농조합법인 종사자가 2,689,418명(추정)이라고 밝히고 있음.

24) 지자체 농어민수당 지급대상에 임업인 포함 여부 :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인천은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임업 미포함('24.8월 기준): 울산, 광주, 세종>

[총 인구 수 대비 농어업경영체 등록자 수 평균 비율]

(단위: 명)

		2020	2021	2022	2023	2024	연평균
총 인구(A)		51,836,239	51,769,539	51,672,569	51,712,619	51,751,065	51,748,406
농어업경영체 등록 농어업인 (경영주 및 경영 주 외 종사자)	농업인(B)	2,478,680	2,571,670	2,554,638	2,554,935	2,538,006	2,539,586
	임업인(C) ¹⁾	8,662	13,409	65,160	67,901	68,996	44,826
	－ 농업인 및 임업 인 중복등록자 (D)	5,998	8,888	53,570	55,211	55,706	35,875
	어업인(E)	86,320	89,332	92,890	95,407	94,295	91,649
	－ 농업인 및 어업 인 중복등록자 (F) ²⁾	34,456 ³⁾	35,749 ³⁾	35,512 ³⁾	35,516²⁾	35,281 ³⁾	35,303
농어민수당 지급대상자 (중복 제거) (I=(B+C+E)-(D+F))		2,533,208	2,629,774	2,623,606	2,627,516	2,610,310	2,604,883
총 인구 대비 농어민수당 지급대상자 비율(J=I/A)		4.89%	5.08%	5.08%	5.08%	5.04%	5.03%

주: 1) 임업인의 경우 '19년 4월부터 산림청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을 시작하였으며, 2022년 10월 1일부터 임업인에 대한 임업 공익기능직불금 지급제도가 시작됨에 따라 임업인의 농업경영체 등록 건수가 크게 상승함

2) 농업인 및 어업인 중복등록자 수는 2023년 12월 말 기준으로 어업경영체 등록된 어업인 전수자료를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과 비교하여 중복되는 인원 수를 산출한 것임(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협업)

3) 2020~2022년 및 2024년의 농업인 및 어업인 중복등록자 수는 데이터가 부재하므로, 2023년 기준 농업인 등록자(2,554,935명) 대비 농어업인 중복등록자(35,516명)의 비율(1.39%)를 각 연도 농업인 수에 곱하여 산출함

자료: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1.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 2023.12.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A001&conn_path=I3

2.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 한편, **문대림의원안**은 농어민수당 지급 제외 대상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반면, **박덕흠의원안**은 직역연금 수급자는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수급자에 대한 제외는 국민의 법감정을 고려하면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수용 가능한 측면이 있음.

직역연금수급자 중에서도 경우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일률적인 규정은 헌법이 규정한 평등권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음.

박덕흠의원안은 제5조제4항에서 수급권자 가구의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는 농어업인 기초연금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직역연금수급자가 이 기준에 해당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제외될 것으로 보임.

○ 또한 **박덕흠의원안** 제5조제3항 각 호에서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 법 상의 기초연금과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을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 금액 조정이 필요한 것인지 그 관계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함.

[현재 농업인들이 받고 있는 타 제도(기초연금 및 노령연금)]

① 기초연금

□ (사업개요) 기초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공적 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현세대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을 보장 및 생활 안정 지원('14.7월 시행)

□ (지원대상 및 내용) 전체 65세 이상 노인 70%를 대상으로 지급

○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금액(선정기준액)을 매년 12월 말에 확정

— 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해당 연도 선정 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

① (선정기준액) 노인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생활 실태, 주택 공시가격,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

< 기초연금 연도별 선정기준액 >

연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단독가구	137만원	148만원	169만원	180만원	202만원	213만원
부부가구	219.2만원	236.8만원	270.4만원	288만원	323.2만원	340.8만원

② (소득인정액)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 소득은 근로·사업·재산·공적이전소득 등을 반영하고, 재산은 일반재산·금융재산 등을 반영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begin{aligned} & \left\{ \begin{aligned} & \{(\text{일반재산} - \text{기본재산액 공제}^*) + (\text{금융재산} - 2,000\text{만원 공제}) - \text{부채}\} \\ & \times \text{소득 환산율}(4\%) \div 12\text{개월} + P^{**} \end{aligned} \right. \\ & + (\text{근로소득} - 110\text{만원 공제}) \times 70\% + \text{기타소득} \end{aligned}$$

* (기본재산액) 주거유지 비용 공제(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 (P값) 사치품으로 분류되는 고급 회원권(골프, 승마, 콘도 등) 및 고급 자동차(4,000만원 이상)는 가액 전액을 소득 반영

□ (지원내용) '24년 기준 월 최대 334,810원(부부가구의 경우 각각 20% 감액)

② 노령연금

□ 국민연금 급여(매월지급) : 노령연금, 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 (노령연금)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 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

- (수급요건) 최소 1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한 후 연금 수급 개시연령(수급연령)에 도달하면 다음달부터 평생 동안 매월 수급

※ 연금수급 개시 연령: (~'52년생) 60세, ('53~'56년생) 61세, ('57~'60년생) 62세, ('61~'64년생) 63세, ('65~'68년생) 64세, ('69~) 65세

- (급여수준)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균등부분)과 본인의 가입기간 및 가입기간 동안의 평균소득(소득비례부분)을 바탕으로 결정

※ 기본연금액 + 부양가족연금액

· 기본연금액: $1.2(A+B)(1+0.05n/12)$

A: 연금수급 직전 3년간의 전체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B: 가입자의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n: 20년 초과 가입월수

· 2024년 부양가족연금액: 배우자(연 293,580원), 자녀·부모(연 195,660원)

※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 수급연령 도달 후 5년 이내 수입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 '15.7.29. 이후 수급권 취득자: A값을 초과하는 소득월액에 대해 구간별로 감액

* A값: 사업장 및 지역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24: 2,989,237)

· '15.7.29. 전 수급권 취득자: 기본연금 × 연령에 따른 지급률

* 연령에 따른 지급률(수급연령 도달 후): 1년 이내(50%), 2년 이내(60%), 3년 이내(70%), 4년 이내(80%), 5년 이내(90%)

- (급여 제한)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사업소득·근로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소득발생년도의 종사월수로 나눈 평균 소득 금액이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A값)을 초과하는 경우

·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수급연령 도달 후 5년 이내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감액 지급

- (중복 조정) 국민연금법에 따른 둘 이상의 급여수급권이 생기면 하나만 선택할 수 있음

다. 지급금액 및 지급 방식 등

□ 농어민수당의 금액과 관련하여

문대림의원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에 따라 공표된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절반 이상의 금액을 매월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안 제17조제2항).

박덕흠의원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어업인 기초연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연 120만원 이상(월 10만원)이 되도록 명시하고 있음(안 제6조제1항).

농어민수당 지원법안 (문대림 의원안)	농업인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박덕흠 의원안)
제17조(수당 지급 시기 및 방법 등) ① 지급 신청기관의 장은 제16조에 따라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자로 결정한 사람에게 농어민수당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20조에 따라 농어민수당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농어민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농어민수당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는 농어민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6조(지급금액 및 지급방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업인 기초연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어업인 기초연금의 지급금액을 정하되, 연 120만원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농어민수당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에 따라 공표된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절반 이상의 금액을 매월 현금으로 지	② 제1항에 따른 지급금액의 적용기간은 지급금액이 결정된 연도의 1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 ③ 농어업인 기초연금은 현금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지역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으로 지급

농어민수당 지원법안 (문대림 의원안)	농업인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박덕흠 의원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8월 1일까지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의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공표하여야 한다. 급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다른 방법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농어민수당 지급시기 및 지급액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농어민수당 지급 시기·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여야 한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업인 기초연금의 지급시기 및 지급금액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농업인 기초연금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농업인 기초연금 지급 시기·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최저생계비(중위소득 60%인 133만원)의 1/2을 매달 지급할 경우 연 798만원(월66만 5천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함.

○ 국회예산정책처는 문대림의원안과 관련하여 월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32%를 곱하여 월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산출한 뒤,

여기에 생계급여 선정기준의 절반(50%) 및 지급개월(12개월) 수를 곱하여 연간 농어민수당 지급단가를 산출하였음.

이에 따르면 연 445만원(월37만 1천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연간 농어민수당 지급단가 산출: 2025~2030년]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¹⁾ (A, 원/월)	2,318,132	2,411,429	2,508,481	2,609,439	2,714,460	2,823,708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 선정기준 비율 ²⁾ (B, %)	32%	32%	32%	32%	32%	32%
1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 (C=A×B, 원/월)	741,802	771,657	802,713	835,020	868,627	903,586
월 농어민수당 지급단가 ³⁾ (D=C×50%, 천원/월)	371	386	402	418	435	452
지급개월 수 (E, 월)	12	12	12	12	12	12
연간 농어민수당 지급단가 (F=D×E, 천원/년)	4,452	4,632	4,824	5,016	5,220	5,424

주: 1) 2024년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2015~2024년 연평균 증가율 4.0% 적용

2)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 선정기준 비율은 32%(2024년 기준)로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3) 월 농어민수당 지급단가는 생계급여 선정기준의 절반 이상이 지급될 수 있도록 백원 단위에서 올림 처리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참고로 「기초연금법」에서는 기초연금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연금액은 원칙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매년 고시하도록 하고,
- 특례를 인정하여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100분의 40 이하인 사람에게 적용하는 기준연금액을 30만원으로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있음.

「기초연금법」 제5조(기초연금액의 산정) ①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의 금액(이하 “기초연금액”이라 한다)은 제2항 또는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연금액(이하 “기준연금액”이라 한다)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기준연금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전년도에 기준연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반영하여 매년 고시한다. 이 경우 그 고시한 기준연금액의 적용기간은 해당 조정연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

③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2021년의 기준연금액은 30만원으로 한다.

제5조의2(저소득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액 산정의 특례) ① 제5조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100분의 40 이하인 사람에게 적용하는 기준연금액은 30만원으로 한다.

○ 한편, 문대림의원안과 박덕흠의원안은 지자체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지급금액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지역간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어 보임.

□ 문대림의원안과 박덕흠의원안은 현금 또는 해당 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지역상품권 등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음.

○ 해당 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다른 방법(지역상품권 등)으로도 지급하도록 한 것은 지역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고 있는 농어민수당의 경우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는 사례가 다수 있음.

라. 정보의 제공 및 자료조사 등

- 두 건의 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급신청기관의 장이 농어민에게 농어민수당의 금액 및 지급 방법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고(문대림의원안 제14조, 박덕흠의원안 제8조),
- 수급권의 발생·변경·상실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문대림의원안 제15조, 박덕흠의원안 제9조).

농어민수당 지원법안 (문대림 의원안)	농업인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박덕흠 의원안)
제14조(정보의 제공)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급신청기관의 장 은 농어민에게 농어민수당의 지급대상, 금 액 및 신청 방법 등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정보의 제공)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급신청기관의 장은 수급권자에게 농어업인 기초연금의 지급대상, 금액 및 신청 방법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 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의 내용 및 정보 제공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련 정보 제공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15조(자료 조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 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급신청기관의 장은 농어민수당 수급권의 발생·변경·상 실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농어민수당 수급 권자 또는 수급자(이하 “수급자등”이라 한 다)에게 필요한 서류나 그 밖에 소득·재 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 으며,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 금 현지조사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자료조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급신청기관의 장은 농어업인 기초 연금 수급권(농어업인 기초연금을 받을 권 리를 말한다. 이하 “수급권”이라 한다)의 발생·변경·상실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급권자에게 필요한 서류나 그 밖에 소득 · 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하도록 할 수 있다.

농어민수당 지원법안 (문대림 의원안)	농업인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박덕흠 의원안)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급신청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조사 또는 농어민수당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방문·조사·질문을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급신청기관의 장은 수급자등이 제1항에 따른 서류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경우에는 농어민수당 지급신청을 각하하거나 지급 결정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급신청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범위·시기·내용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급신청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조사 또는 농업인 기초연금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급신청기관의 장은 수급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업인 기초연금 지급신청을 각하하거나 지급 결정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서류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2.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경우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급신청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조사·질문의 범위·시기

농어민수당 지원법안 (문대림 의원안)	농업인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박덕흠 의원안)
·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수당 수급계좌 및 압류금지) ① 지급신청기관의 장은 수급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농어민수당을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농어민수당수급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농어민수당 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민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농어민수당수급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은 이 법에 따른 농어민수당만이 농어민수당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급자에게 농어민수당으로 지급된 금품이나 이를 받을 권리와 농어민수당지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④ 수급자는 농어민수당을 받을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⑤ 제1항에 따른 농어민수당 신청방법 및 절차와 제2항에 따른 농어민수당수급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내용·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사후관리[문대림 의원안 제4장(제19조~제24조), 박덕흠의원안 제4장(제11조~제15조)]

- 두 건의 제정안은 농어민수당의 지급정지, 수급권의 상실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가. 지급정지

- 지급정지 사유로 두 제정안은 직접지불금 보조금 부정 수급,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농지·산지 관련 불법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음.

문대림의원안은 ① 신청 직전연도에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② 신청 직전연도 기준 해당 분야에 종사한 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③ 신청 직전연도의 농어업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경우 ④ 국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추가로 규정하고 있음.

- 두 제정안은 기본적으로 관련 법 위반 시 농어민수당 지급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으로, 농어민수당의 취지가 농어업·농어촌의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한 것임을 감안하면 영농·영어활동 과정에서 불법 행위자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을 필요가 있음. 추가적으로 문대림의원안은 실제 농어업 종사 여부를 지급정지의 주된 사유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농어민수당 지원법안 (문대림 의원안)	농업인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박덕흠 의원안)
제4장 사후관리 제19조(수당 지급 정지) ① 지급신청기관의 장은 농어민수당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농어민수당의 지급을 정지한다. 1. 신청 직전연도에 제12조제1항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2. 신청 직전연도 기준 해당 분야에 종사한 지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3. 신청 직전연도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경우 4.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여 처벌을 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5.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6. 농지·산지와 관련된 불법 행위로 법적 처분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7. 국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이 경우 국외 체류 60일이 되는 날을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로 본다.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급 정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농업인 기초연금 수급권자 사후관리 제11조(지급 정지) ① 지급신청기관의 장은 수급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농업인 기초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1.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지불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여 징계 처분을 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2.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3. 농지·산지·어장과 관련된 불법 행위로 법적 처분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급 정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수급권의 상실 및 수급권의 환수 등

□ **박덕흠의원안** 제12조제2항은 수급권자가 수급권을 상실해도 수급권자의 가구 구성원이 있을 경우, 그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기초연금 지급대상자가 구비해야 할 요건(주소 요건, 가구의 종합소득금액 요건 등)을 갖추지 않은 가구 구성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면, 농어민수당의 지급 취지에 맞지 않음.

○ 만약 가구 구성원이 농어민수당 지급대상자 구비요건을 갖춘 경우에 지급하려는 취지라면, 그 요건에 해당하여야 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야 지급신청기관의 장의 자의적인 지급결정 또는 집행상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농어민수당 지원법안 (문대림 의원안)	농업인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박덕흠 의원안)
제20조(수급권의 상실) 농어민수당 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급권을 상실한다. 1. 사망한 때 2.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3. 제12조제1항에 따른 농어민수당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제12조(수급권의 상실) ① 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급권을 상실한다. 1. 사망한 때 2.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3.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제1호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수급권을 상실하여도 수급권자의 가구 구

농어민수당 지원법안 (문대림 의원안)	농업인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박덕흠 의원안)
제21조(수당의 환수) ① 지급신청기관의 장은 농어민수당을 지급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농어민수당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농어민수당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환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민수당을 받은 경우 2. 제19조에 따라 기본수당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농어민수당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농어민수당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지급신청기관의 장은 환수 대상자에게 지급할 농어민수당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환수할 농어민수당(이하 “환수금”이라 한다)과 상계할 수 있다. ③ 지급신청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농어민수당의 지급을 정지하고 그 사유를 수급권자에게 소명하게 하거나 제15조에 따른 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지급신청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성원이 있을 경우, 지급신청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그 가구 구성원의 최고 연장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환수) ① 지급신청기관의 장은 수급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농업인 기초연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농업인 기초연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환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업인 기초연금을 받은 경우 2. 제11조에 따라 농업인 기초연금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농업인 기초연금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농업인 기초연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지급신청기관의 장은 환수 대상자에게 지급할 농업인 기초연금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환수할 농업인 기초연금(이하 “환수금”이라 한다)과 상계할 수 있다. ③ 지급신청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농업인 기초연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그 사유를 농업인 기초연금 수급권자에게 소명하게 하거나 제9조에 따른 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급신청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금

농어민수당 지원법안 (문대림 의원안)	농업인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박덕흠 의원안)
우에는 환수금을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환수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2. 환수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행방불명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어 환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2조(신고) 농어민수당 수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지급신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제20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지급신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소멸한 경우 2. 제20조 각 호에 따른 농어민수당 수급권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3조(환수금의 고지·독촉 및 징수) ① 지급신청기관의 장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환수금을 징수하려면 기한을 정하여 환수금의 금액 및 납부기한 등을 적은 문서로 납입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지급신청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고지를 받은 사람이 그 기한까지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독촉하여야 한다.	을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신고) 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지급신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제12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지급신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소멸한 경우 2. 제12조 각 호에 따른 농업인 기초연금 수급권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5조(환수금의 고지·독촉 및 징수) ① 지급신청기관의 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환수금을 징수하려면 기한을 정하여 환수금의 금액 및 납부기한 등을 적은 문서로 납입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지급신청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고지를 받은 사람이 그 기한까지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독촉하여야 한다.

농어민수당 지원법안 (문대림 의원안)	농업인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박덕흠 의원안)
③ 지급신청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사람이 그 기한까지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 지급신청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사람이 그 기한까지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다. 농어민수당의 특례

- 문대림의원안은 이 법에 따라 지급신청기관의 장이 지급하는 농어민수당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3제1항의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농어민수당 지원법안(문대림 의원안)

제24조(농어민수당의 특례) 이 법에 따라 지급신청기관의 장이 지급하는 농어민수당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3제1항의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3(소득인정액의 산정) ① 제2조제9호에 따른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은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도 불구하고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다음 각 호의 소득을 합한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서 장애·질병·양육 등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요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하여 산정한다.

- | | |
|---------|---------|
| 1. 근로소득 | 3. 재산소득 |
| 2. 사업소득 | 4. 이전소득 |

- 다만, 농어민수당을 소득에서 제외하는 특례 규정은 기초생활 보장 제도의 급여원칙인 보충성의 원칙(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지원), 타 이전소득 및 급여와의 형평성, 법체계상의 문제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조(급여의 기본원칙)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그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②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는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의 수준이 이 법에서 정하는 수준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를 잃지 아니한다.

(5) 보칙[문대림의원안 제4장(제25조~제27조), 박덕흠의원안 제6장(제18조~제20조)]

농어업인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권리보호[박덕흠의원안 제5장(제16조·제17조)]

가. 비용의 분담

□ 농어민수당 제도를 도입할 경우 문대림의원안은 농어민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 중 100분의 40 이상의 범위에서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고, 박덕흠의원안은 기초연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 중 40%에서 90%까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바, 재원조달과 관련한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농어민수당 지원법안 (문대림 의원안)	농업인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박덕흠 의원안)
제5장 보칙	제5장 농업인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권리보호
제27조(비용의 분담)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어민 인구 비율 및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어민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 중 100분의 40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비용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그 분담비율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0조(비용의 분담)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인 인구 비율 및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업인 기초연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 중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9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을 뺀 비용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상호 분담한다. 이 경우 그 부담비율은 농업인 인구 비율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시·도의 조례 및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비 및 지방비의 분담률을 50:50으로 가정했을 때,

문대림의원안에 따른 경우(월 41만원)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65조 504억원(연평균 13조 101억원)으로 추계되며²⁵⁾,

박덕흠의원안에 따른 경우(월 10만원)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15조 5,418억원(연평균 3조 1,084억원)으로 추계된다고 함²⁶⁾.

25) (국비) 32조 5,252억원 (연평균 6조 5,050억원)/(지방비) 32조 5,252억원 (연평균 6조 5,050억원)

26) (국비) 7조 7,709 억원 (연평균 1조 5,542억원)/(지방비) 7조 7,709 억원 (연평균 1조 5,542억원)

[문대림의원안 농어민수당 지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단위: 천명, 억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농어민수당 지급대상자 수 (A, 천명)	2,598	2,594	2,590	2,587	2,583	—	—
연간 지급액 (B, 백만원)	4.6	4.8	5.0	5.2	5.4	—	—
추가재정소요 (C=A×B, 억원)	120,333	125,140	129,932	135,018	140,080	650,504	130,101
국비 (D=C×50%)	60,167	62,570	64,966	67,509	70,040	325,252	65,050
지방비 (E=C×50%)	60,167	62,570	64,966	67,509	70,040	325,252	65,050

주: 1) 농어민수당 지급대상자 수는 총 인구의 5.3% 수준으로 가정
 2) 농어업법인 등록자는 추계대상에서 제외
 3) 농어민수당은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 선정기준('24년 기준 32%)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
 자료: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및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박덕흠의원안 농어업인 기초연금 지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단위: 천명, 억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농어업인 기초연 금 지급대상자 수 (A, 천명)	2,598	2,594	2,590	2,587	2,583	—	—
연간 지급액 (B, 백만원)	1.2	1.2	1.2	1.2	1.2	—	—
추가재정소요 (C=A×B, 억원)	31,174	31,129	31,084	31,039	30,991	155,418	31,084
국비 (D=C×50%)	15,587	15,565	15,542	15,519	15,496	77,709	15,542
지방비 (E=C×50%)	15,587	15,565	15,542	15,519	15,496	77,709	15,542

주: 1. 농어업인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수는 총 인구의 5.3% 수준으로 가정
 2. 농어업법인 등록자는 추계대상에서 제외
 3. 농어업인 기초연금 지급단가는 연간 120만원이며 추계기간 동안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및 해양수산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기초연금법」 등 유사입법례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법령명	법령 내용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보건복지부)	제43조(보장비용의 부담 구분) ① 보장비용의 부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국가 또는 시·도가 직접 수행하는 보장업무에 드는 비용은 국가 또는 해당 시·도가 부담한다. 2. 제19조제2항에 따른 급여의 실시 비용은 국가 또는 해당 시·도가 부담한다. 3. 시·군·구가 수행하는 보장업무에 드는 비용 중 제42조제1호 및 제2호의 비용은 해당 시·군·구가 부담한다. 4. 시·군·구가 수행하는 보장업무에 드는 비용 중 제42조제3호 및 제4호의 비용(이하 이 호에서 “시·군·구 보장비용”이라 한다)은 시·군·구의 재정여건, 사회보장비 지출 등을 고려하여 국가, 시·도 및 시·군·구가 다음 각 목에 따라 차등하여 부담한다. 가. 국가는 시·군·구 보장비용의 총액 중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90 이하를 부담한다. 나. 시·도는 시·군·구 보장비용의 총액에서 가목의 국가부담분을 뺀 금액 중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70 이하를 부담하고, 시·군·구는 시·군·구 보장비용의 총액 중 에서 국가와 시·도가 부담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부담한다. 다만,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는 시·군·구 보장비용의 총액 중에서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부담한다. ② 국가는 매년 이 법에 따른 보장비용 중 국가부담 예정 합계액을 각각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그 과부족(過不足) 금액은 정산하여 추가로 지급하거나 반납하게 한다. ③ 시·도는 매년 시·군·구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국가의 보조금에, 제1항제4호에 따른 시·도의 부담예정액을 합하여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그 과부족 금액은 정산하여 추가로 지급하거나 반납하게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조금의 산출 및 정산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급여 범위 및 수준을 초과하여 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그 초과 보장비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2	기초연금법 (보건복지부)	제25조(비용의 부담)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 중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9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을 뺀 비용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상호 부담한다. 이 경우, 그 부담비율은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시·도의 조례 및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기초연금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제23조(비용의 부담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별로 부담하는 기초연금 지급 비용의 비율은 별표 2와 같다. ② 국가 또는 특별시·광역시·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있는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별표 2의2에서 같다)가 부담하는 기초연금의 지급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지급한다. 1.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의 경우: 국가는 매년 제1항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을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에 지급한다. 2. 시·군·구의 경우: 국가는 매년 제1항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을 특별시·광역시·도에

		지급하고, 특별시·광역시·도는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에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 조례로 정한 특별시·광역시·도가 부담하는 금액(이하 이 호에서 “특별시·광역시·도 부담금”이라 한다)을 더하여 시·군·구에 지급한다. 이 경우 특별시·광역시·도 부담금을 산정할 때에는 제5항에 따른 비용은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초연금의 지급 비용으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는 기초연금 수급권자,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며, 기초연금을 지급한 결과 부족한 금액이나 남은 금액의 정산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국가와 정산하고, 시·군·구의 경우에는 국가 및 특별시·광역시·도와 각각 정산한다. ④ 국가는 기초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급여·수당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의 국가부담비율에서 100분의 10을 뺀 비율(별표 2의 국가부담비율에서 100분의 10을 뺀 비율이 100분의 40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부담할 수 있다. ⑤ 국가는 별표 2의 재정자주도가 50퍼센트 미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군·구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의2에 따른 비용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1. 별표 2의 국가부담비율이 100분의 70으로서 별표 2의2의 사회복지분야 재정지출지수가 20퍼센트 이상인 시·군·구 2. 별표 2의 국가부담비율이 100분의 80으로서 별표 2의2의 사회복지분야 재정지출지수가 60퍼센트 이상인 시·군·구
3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보건복지부)	제58조(국가의 부담) ①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제40조 제2항 및 제4항제1호에 따라 면제 및 감경됨으로 인하여 공단이 부담하게 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및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부담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구가 분담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액 부과, 징수 및 재원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장애인연금법 (보건복지부)	제21조(비용의 부담) 장애인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가 부담한다.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제14조(비용의 부담 등) ① 법 제21조에 따라 국가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별로 부담하는 장애인연금 비용의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시: 100분의 50 2. 광역시·도·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100분의 70 ② 제1항에 따라 국가가 부담한 금액을 뺀 금액에 대해서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군·구가 상호 분담하되, 그 부담비율은 특별시·광역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나. 기타사항

두 제정안은 이의신청, 시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농어민수당 지원법안 (문대림 의원안)	농업인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박덕흠 의원안)
제25조(이의신청) ① 제16조에 따른 결정이 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지급신청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지급신청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조치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수급권의 보호) ① 수급권은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압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② 농어업인 기초연금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압류할 수 없다. 제17조(이의신청) ① 제10조에 따른 결정이 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지급신청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이의신청의 절차 및 결정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농어민수당 지원법안 (문대림 의원안)	농업인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박덕흠 의원안)
제26조(시효) 수급권자의 권리와 제21조에 따른 환수금을 환수할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제6장 보칙 제18조(시효) 제14조에 따른 환수금을 환수할 권리와 수급권자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제19조(끝수의 처리) 이 법에 따른 농업인 기초연금액, 환수금 등을 산정하는 경우에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6) 부칙(시행일)

☐ 두 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농어민수당 지원법안(문대림 의원안)· 농업인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박덕흠 의원안)
--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 의 처

02)6788-5414